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변경계획 공고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변경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2026. 8. 21.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I 주요 변경사항

- 경영안정자금 용자취급기관 추가: 한국 수출입은행
 - 도내 수출기업의 금융접근성 확대를 위해 한국수출입은행 용자취급기관으로 추가

구분	현 행	변경
경영안정자금 용자취급기관	도내 13개 금융기관,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	도내 14개 금융기관,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KDB 산업은행, NH농협은행, Sh수협은행, 신협중앙회, MG새마을금고, 지역 농· 축협, IM뱅크,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 역본부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KDB 산업은행, NH농협은행, Sh수협은행, 신협중앙회, MG새마을금고, 지역 농· 축협, IM뱅크,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 역본부, 한국수출입은행

II 지원 계획

○ 지원기간 : 2026. 1. 2. ~ 자금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도내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 보유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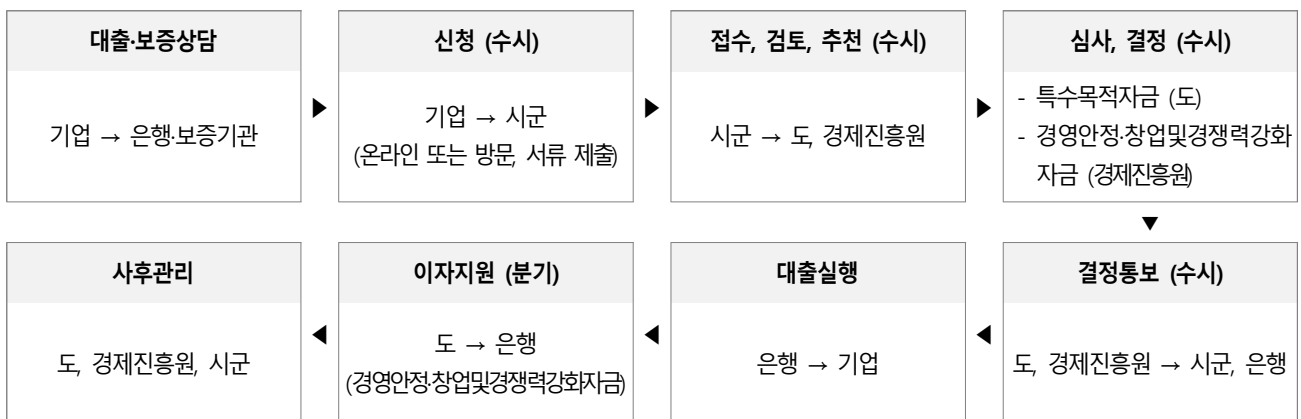
○ 자금별 지원내용

[자금별 세부 지원계획 참조]

자금명	지원업종	융자 재원	지원 내용	지원조건			
				대출한도	기간	지원 내용	기업 부담
경영안정 (3050억 원)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제조업 등), 지식정보업(정보통신업 등), 그 밖의 업종 I(건설업 등), 그 밖의 업종 II(도·소매업 등), 그 밖의 업종 III(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은행 자금	이자 지원	운전자금 10억 원 (우대 시 최대 20억 원)	4년 (일시상환)	이자지원 2.0% (우대 시 2.5% 또는 3.0%)	대출 금리 - 이자 지원
	창업 및 경쟁력강화 (650억 원)			시설자금 18억 원	9년 (4년 거치 5년 균등상환)	이자지원 2.0%	
특수목적 (300억 원)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제조업 등), 지식정보업(정보통신업 등), 그 밖의 업종 I(건설업 등)	기금	융자 지원	운전·시설자금 8억 원 (시설자금 우대 시 최대 20억 원)	5년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고정금리 1.5%	1.5%

※ 특수목적자금 중 일부 유형 기간은 2년(일시상환)

○ 지원절차 [융자관리시스템: (기업용) hext.gwep.or.kr, (금융기관용) harus.gwep.or.kr]



○ 융자한도

- (공통) 최근 5년간 육성자금 총 융자한도: 50억 원(신청일 기준 대출잔액)

- ▶ 융자를 미실행하였더라도 유효기간 내에 있는 융자추천결정서 결정금액 포함하여 산정
- ▶ 과거 특별지원자금(코로나19, 산불, 우크라이나-러시아 사태, E-커머스 피해기업, 강릉 가뭄 피해기업)은 대출잔액 계산 시 제외

- (경영안정자금) 10억 원 한도, 최근 2개 연도 평균 매출액의 90% 범위 내
 - ▶ 단, 매출액이 1억 원 미만인 창업초기(3년 이내) 기업은 1억 원 범위 내 → 매출액 기준 미적용
 - ▶ 경영안정자금 상환 후, 1년 동안 상환 금액만큼 경영안정자금 재신청 불가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18억 원 한도, 소요액(공급가)의 75% 범위 내
 - ▶ 단, 이미 지출된 금액(계약금 등)은 제외
 - ▶ 개인 간 거래 시, 특수관계인(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등)과의 거래 제외
- (특수목적자금) 운전·시설 자금 8억 원 한도
 - ▶ [운전자금] 매출액 1억 원 미만 기업과 창업초기(3년 이내)기업은 2억 원 한도

○ 지원 제외대상

- 납세 의무 이행 여부, 기업경영 상황 관련
 - ▶ 세금(국세, 지방세)을 체납 중인 기업
 - ▶ 휴·폐업 중인 기업(단, 휴업기업은 특수목적자금 중 재해재난기업지원자금 신청 가능)
 - ▶ 전액 자본잠식 중인 기업
- 기업이 영위하는 업종, 관계 법령상 중소기업 해당 여부 관련
 - ▶ 부동산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등 소비·투기 조장업
 - ▶ 금융기관 여신운영규정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기업
 - ▶ 불건전 영상게임기 및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 관계 법령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자금 허위·부정 신청, 용도 외 사용, 대출 미실행 관련
 -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신청한 기업 → 융자추천 영구 제한
 - ▶ 지원용도 외 자금사용(임대수입, 용도전환 후속계획 미실행 등) 기업 → 해당자금 향후 3년간 융자추천 제한
 - ▶ 융자 추천기업 중 유효기간 내 대출 미실행 기업(단, 일부라도 실행하면 미실행으로 보지 않음)
 - 해당자금 유효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간 융자추천 제한
- 정부·지자체 정책자금, 중복지원 제한 관련
 - ▶ 최근 5년간 정책자금(정부, 지자체) 지원실적 100억 원 초과 기업
 - ▶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의 이차지원을 지원받는 중인 기업(운전자금 신청 시)
 - ▶ 강원특별자치도 타기금 융자사업 지원을 받는 중인 기업(자금 사용 목적이 동일할 경우)

○ 융자 승인사항 변경 신고·승인 신청 사항

- 신청방법 :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변경신청서 작성 제출
- 접수처 : 해당 시군 기업지원부서

- 신청대상

- ▶ 신고대상 : 대표자기업형태의 변경(상속에 따른 승계), 상호·소재지의 변경, 휴·폐업, 기타 업체의 변동사항
- ▶ 승인대상 : 상속에 따른 변경을 제외한 대표자의 변경, 법인 전환, 주생산업종의 변경, 계약대상·시설의 변경, 용자의 추천기한·취급은행의 변경, 자금의 종류·용도의 변경, 담보종류의 변경
 - ※ 창업및경쟁력강화·특수목적자금의 경우 대출실행 후 취급은행 변경 불가
 - ※ 특수목적자금의 경우 자금용도 변경은 전체 금액의 20% 이내만 가능

○ 사후관리 협조사항

- (기업) 자금사용 완료시, 1개월 내 '자금사용완료 보고서(서식7)' 제출
 - (시군) 자금사용 완료 보고서 확인 후(현지확인 등), 시스템에 등재
- (기업) 연 1회 이상 실태조사 시, 관련 자료 제출 적극 협조
 - 용도 외 자금 사용 시, 이자지원 중단·원금상환자금 신청 제한 등 제재조치

< 주요 사후관리 대상 >

- 자금지원의 이유가 사라진 경우(기업의 휴·폐업이나 다른 시도로의 이전 등)
- 자금지원의 목적이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접경지역 입주기업이 도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 등)
- 기업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이 향후 정상적인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금의 지원 제외 또는 중단의 주요 대상 >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신청한 경우
- 세무사 또는 회계사 확인으로 제출된 추정재무제표와, 추후 제출된 결산재무제표의 차이가 현저하여, 용자 승인내용·여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기업이 휴·폐업하였거나, 다른 시도로 이전한 경우
- 접경지역 입주기업이 도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 용자지원을 받은 시설의 매각·임대 등으로 생산활동에 자금이 직접 사용되지 않은 경우 (임대수입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시설자금 실행 후 공장 운영, 제조업 전환(비제조업이 시설자금을 받은 경우) 등 후속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용자추천 결정기관의 승인 없이 자금의 용도를 전환하여 사용한 경우(운전자금 ↔ 시설자금)
- 도내 청년 신규 정규직 채용 기업이 용자기간동안 고용 유지 의무를 미이행한 경우
- 대표자, 업종 등 소정의 변경 사항 신고·승인신청을 미이행한 경우
- '자금 사용 완료 보고서'를 미제출하고 있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 지원문의: 각 시군 중소기업육성자금 관련 부서

기관	담당부서	연락처
춘천시	기업지원과	(033)250-3088
원주시	기업지원일자리과	(033)737-2975
강릉시	기업지원과	(033)640-5854
동해시	경제과	(033)530-2310
태백시	경제과	(033)550-7175
속초시	지역경제과	(033)639-2352
삼척시	경제과	(033)570-3363
홍천군	경제진흥과	(033)430-2812
횡성군	경제정책과	(033)340-2046
영월군	경제과	(033)370-2740
평창군	경제과	(033)330-2750
정선군	전략산업과	(033)560-2969
철원군	경제진흥과	(033)450-4976
화천군	지역경제과	(033)440-2109
양구군	경제체육과	(033)480-7105
인제군	경제산업과	(033)460-4412
고성군	투자유치과	(033)680-3756
양양군	경제에너지과	(033)670-2690

※ 강원특별자치도 기업지원과: (033)249-2757)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033)749-3398

III

자금별 세부 지원계획

1 경영안정자금 (금융기관 협력자금)

○ 지원내용 : 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운전자금

- 자금규모 : 3,050억 원
- 지원업종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정보업 그 밖의 업종Ⅰ·Ⅱ·Ⅲ *붙임 참고
- 융자한도 : 운전자금 **10억 원 한도**, 최근 2개 연도 평균 매출액의 90% 범위 내
※ 단, 매출액 1억 원 미만인 창업초기(3년 이내) 기업은 1억 원 범위 내(매출액 기준 미적용)

기업 유형		이자지원율	융자한도(이하)	융자기간	
○ 일반기업	○ 도내 이전기업(3년 이내), 벤처기업 ○ 북평공단 및 폐광지역 입주업체 ○ Inno-biz, Main-biz 선정기업 ○ (예비)사회적, 마을기업(도지사 선정)	2.0%	10억 원	최근 2년간 평균매출액의 90% 범위 내 (단, 매출액 1억 원 미만인 창업 초기(3년 이내) 기업은 1억 원 범위 내 * 창업기업 확인서 제출)	최대 4년 (일시상환)
	○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장관 선정) ○ 마을기업(행정안전부장관 선정) ○ 가족친화기업(성평등가족부장관선정)	2.0%	11억 원		
	○ 강원스타기업·강원바이오스타기업· 강원바이오유망기업(도지사 선정) ○ 수출기업, 창업초기기업 ○ 강원 전략산업 벤처펀트 투자기업	2.0%	12억 원		
	○ 향토기업(도내 20년 이상 기업) ○ 여성기업(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 장애인기업(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 일자리 대상기업(도지사 선정) ○ 강원지역혁신선도기업(도지사 선정) ○ 도내 청년 신규 정규직 채용 기업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채용) ○ 상생결제 참여 기업 ○ 강원국방벤처센터 협약기업 ○ 도 투자협약기업 ○ 도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입주기업	2.5%	10억 원		
	○ 백년기업·유망중소기업(도지사 선정)	2.5%	12억 원		
	○ 접경지역 입주기업 - 양구·철원·화천·인제·고성 - 춘천, 속초	3.0%	20억 원		
		3.0%	16억 원		
		2.0%	16억 원		

※ 대출금리: 개별 은행금리 기준에 따름

※ 도내 청년 신규 정규직 채용 기업의 경우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채용(신청일 현재 고용유지) 및 융자기간 동안 고용 유지 조건

※ 도 투자협약기업의 경우, 도와 투자협약을 완료 후 투자계획에 따라 공장을 가동 중인 기업(공장등록 후 3년 이내)

※ 강원중소기업대상 및 강원수출대상 수상기업 이자지원율 추가 우대(대상 1.0%, 우수 0.7%, 장려특별 0.5%)

▶ 수상일로부터 2년내 신청, 융자기간(최대 4년) 동안 추가 우대 *공고일 이후 신청부터 적용

- 융자취급 금융기관(15): 도내 14개 금융기관,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KDB산업은행, NH농협은행, Sh수협은행, 신협중앙회, MG새마을금고, 지역 농·축협, IM뱅크,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 한국수출입은행

- 유효기간: 융자추천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연장 불가)

- 신청서류: 공통서류(신청서 등), 업종별 서류, 자금별 서류 *붙임 참고

②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금융기관 협력자금)

○ 지원내용 : 기업의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시설자금

- 자금규모 : 650억 원
- 지원업종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정보업, 그 밖의 업종 I *붙임 참고
 ※ 단, 제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시설투자 하는 비제조기업일 경우 지원업종에 포함
- 용도제한
 - ▶ 부지매입비(개별입지)는 건축허가(건축신고)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에 한함
 - ▶ 부지매입비(계획입지)는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 기업에 한정
 - ▶ 건물(공장) 신축비용은 공장등록을 위한 관련 절차를 이행한 기업에 한정
 - ▶ 단순 사무실, 일반창고, 부동산 투기 우려의 경우 승인 제한
- 용자한도 : 시설자금 **18억 원 한도**, 소요액(공급가)의 75% 범위 내

기업 유형	이자지원율	용자한도(이하)		용자기간
○ 일반기업	2.0%	시설자금 18억 원	소요액(공급가)의 75%	9년 (4년 거치 5년 균등상환)

※ 대출금리 : 분기별 변동금리(기획재정부 고시 금리 기준)

※ 지식산업센터 입주(예정)기업 중 지식정보업 영위 기업은 필수 업무시설(사무실 형태) 매입 자금을 소요액의 최대 50% 한도 내에서 지원함

※ 신규 산단입주 기업은 중도금, 잔금 등 분할신청 가능. 단, 각 신청 건은 별건으로 취급함

- 용자취급 금융기관(9) : 전국 제1 금융기관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KDB산업은행, NH농협은행, Sh수협은행, IM뱅크

- 유효기간 : 용자추천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1회 6개월 연장 가능)
- 신청서류 : 공통서류(신청서 등), 업종별 서류, 자금별 서류 *붙임 참고

③ 특수목적자금

○ 지원내용 : 소정의 특수한 목적을 위한 운전·시설자금

- 자금규모 : 300억 원

- 지원업종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정보업, 그 밖의 업종 I *붙임 참고

기업 유형	지원 조건
① 고용창출지원자금	•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 수상 기업(수상일로부터 2년)
② 산업단지지원자금	• 산업단지·농공단지 입주 예정, 또는 입주기업
③ 스마트공장구축지원자금	•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에 참여한 기업 ※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수혜기업은 제외
④ 재해재난기업지원자금 (30억 원 배정)	• 재해 및 FTA, 고환율, 원자재난, 물류비 피해 등 외부 요인에 의한 피해기업(시장·군수 추천기업) * 원자재난: 최근 2년 내 30% 이상 가격이 상승한 원자재를 전체 원자재의 40% 이상을 취급한 기업 * 물류피해: 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상' '판매비및관리비' 항목 중에 '운반비'와 '차량 유지비'의 총 매출액 대비 비율이 최근 2년 내 5%p 이상 증가한 기업
⑤ 수출기업지원자금 (70억 원 배정)	• 신청일 기준 1년 내 직·간접 수출 1만불 이상 실적 보유기업 ※ 기업별 최대 3억원 한도 내 연간 수출액 범위 내 지원
⑥ 기업위기대응자금 (30억 원 배정)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중소기업밀집지역 중 위기징후 '심각' 단계기업 *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 폐광지역 기업
⑦ 육아유연근무지원자금 (20억 원 배정)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기업 ① 육아재택근무 또는 육아시간선택제 도입 기업(신청일 기준 과거 1개월 이상 사용실적) * 자금 대출실행 이후 향후 대출기간 1년간 육아재택근무 또는 육아 시간선택제 매월 10일 이상 활용 근로자 2명 이상 기업 ② 현행법상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중 어느 하나 이상을 활용한 기업(신청일 기준 과거 1회 이상 사용실적)
⑧ 가족친화기업지원자금 (15억 원 배정)	• 가족친화인증기업(성평등가족부장관 인증)
⑨ 긴급경영예비자금 (35억 원 배정)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내 피해기업 • 코로나 등 전국 또는 도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발생한 사태에 대한 기업 경영 회복을 위한 자금

- 용자한도 : 운전·시설 자금 8억 원 한도 * ⑤~⑧유형은 3억 원 한도

▶ [운전자금] 매출액 1억 원 미만 기업과 창업초기(3년 이내) 기업은 2억 원 한도

기업유형	금리	용자한도(이하)		용자기간
①~④	1.5% 고정금리	운전·시설자금 8억 원	[운전자금] 매출액 1억 원 미만 기업과 창업초기(3년 이내) 기업은 2 억 원 한도	5년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⑤		운전자금 3억원	-	5년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⑥~⑧		운전자금 1~3억 원 최근 2년 평균 매출액 10억 원 미만 1억 원 최근 2년 평균 매출액 10~30억 원 미만 2억 원 최근 2년 평균 매출액 30억 원 이상 3억 원	-	2년 일시상환 * 분기별 3, 6, 9, 12월 만기 설정으로 실제 기간은 2 년이 안될 수 있음
⑨		용자지원 조건 상황 발생 시 별도 계획에 따라 운영		

※ (⑦육아유연근무지원자금 중 ①에 해당하는 기업) 육아 재택근무·시간선택근무 제도를 1개월 이상 활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향후 대출기간 2년 간 활용계획을 신청 시 1회, 그리고 대출기간 2년간 활용실적을 분기별 각 1회 제출(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근무신청서, 명령서, 근로자 주민등록등본 등)

→ 분기별 활용실적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등을 확인 시, 자금을 환수조치 할 수 있음

※ (⑦육아유연근무지원자금 중 ②에 해당하는 기업) 현행법상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과거 1회 이상 사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 시 1회 제출(고용보험으로부터 급여(→근로자)와 지원금(→사업주)을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시설자금 지원 시 한도 우대(신청자금의 70% 이상이 시설자금일 때)

창업초기(10억 원), 유망중소기업(15억 원), 백년기업(20억 원), 접경지역(양구·철원·화천·인제·고성) 입주기업(10억 원), 강원지역혁신선도기업·강원스타기업·강원바이오스타기업·강원바이오유망기업(15억 원)

- 용자취급 금융기관(9) : 도내 제1 금융기관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KDB산업은행, NH농협은행, Sh수협은행, IM뱅크

- 유효기간 : 용자추천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시설자금만 1회 6개월 연장 가능)

- 신청서류 : 공통서류(신청서 등), 업종별 서류, 자금별 서류 *붙임 참고

붙임

자금별 지원대상 현황

■ 지원대상(공통): 경영안정자금·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특수목적자금

구 분	한국표준산업 분 류 번 호	대 상 업 종	증 빙 자 료
-----	-------------------	---------	---------

○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서비스업 (상시고용 5인 이상*) * 단, 창업초기기업(3년 이내) 상시고용 미적용

C. 제조업	10~34	제조업	등록증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35114	태양력 발전업 (발전 용량 1,000kW 이상)	허가증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37 381 3821 3822 3823 383 39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업 폐기물 수집, 운반업 지정 외 폐기물 처리업 지정 폐기물 처리업 건설 폐기물 처리업 해체, 선별 및 원료재생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허가증
H. 운수 및 창고업	491 492 493 49401 501 502 521 52913 5294 5299	철도 운송업 육상여객 운송업(개인,1인기업 제외) 도로화물 운송업(개인,1인기업 제외) 택배업(1인기업 제외) 해상운송업 내륙수상 및 항만내 운송업 보관 및 창고업 물류터미널 운영업 화물취급업 그 외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등록/허가증
N. 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74 76390	사업시설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기타 산업용기계 및 장비 임대업	등록/허가증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951 95211	컴퓨터 및 통신장비 수리업 자동차 종합 수리업	등록/허가증

구 분	한국표준산업 분 류 번 호	대 상 업 종	증 빙 자 료
-----	-------------------	---------	---------

○ 지식정보업 (상시고용 5인 이상*) * 단, 창업초기기업(3년 이내) 상시고용 미적용

J. 정보통신업	581	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등록/허가증
	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11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5912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업	
	5920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612	전기통신업	
	620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31	자료처리,호스팅,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639	기타 정보 서비스업	
M.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01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등록/허가증
	702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713	광고업	
	714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71531	경영컨설팅업	
	721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	
	729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32	전문 디자인업	

○ 그 밖의 업종 I(상시고용 5인 이상)

F.건설업	41	종합건설업	등록증
	42	전문직별 공사업	
I. 숙박 및 음식점업 中 관광숙박업	55101	호텔업	
	55103	휴양콘도 운영업	

※ ‘상시고용 인원’은 고용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기준으로 하며, 신청일 기준 과거 6개월 이상 고용인원 조건을 충족했어야 하고, 또 신청일 현재 충족하고 있어야 함.
(단, 타 시도에 소재한 사업장의 인원은 합산하지 않음)

■ 지원대상(개별): 경영안정자금

구 분	한국표준산업 분 류 번 호	대 상 업 종	증 빙 자 료
-----	-------------------	---------	---------

○ 그 밖의 업종 Ⅱ(상시고용 5인 이상)

여행업	75210	여행사업	등록증 (관광진흥법)
유원시설업	91210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관광편의시설업	5611	관광식당업	
	73301	관광사진업	
	55104	관광펜션업(민박업)	
	55104	한옥체험업(민박업)	
	47130	면세점업	
	75290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서비스업	
	75210	관광여행알선	
관광사업 기타		종합휴양업, 전문휴양업 관광유람선업 관광순환버스업 관광궤도업 국제회의업	등록/허가증
G.도매 및 소매업	45~47	도매 및 소매업	
I. 숙박 및 음식점업	55~56	숙박 및 음식점업 (단 55101, 55103 → 그 밖의 업종 I)	
N.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75992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7611	자동차 임대업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96911	산업용 세탁업	등록/허가증
	96913	세탁물 공급업	

○ 그 밖의 업종 Ⅲ(상시고용 5인 이상)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01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등록/허가증
	902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91111	실내경기장 운영업	
	91112	실외 경기장 운영업	
	91131	종합스포츠시설 운영업	
	91132	체력 단련시설 운영업	
	91292	체육 공원 및 유사공원 운영업	
	91293	기원 운영업	
	912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오락관련 서비스업	

※ ‘상시고용 인원’은 고용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기준으로 하며, 신청일 기준 과거 6개월 이상 고용인원 조건을 충족했어야 하고, 또 신청일 현재 충족하고 있어야 함.
(단, 타 시도에 소재한 사업장의 인원은 합산하지 않음)

■ 지원제외(공통):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융자제외 업종 中

구분	한국표준산업 분 류 번 호	대 상 업 종
제조업	33402 영상게임기 제조업 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 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46102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中	담배 중개업
	4633 음료 및 담배 도매업 中	46333 담배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5621	주점업
정보통신업	5821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中	“불건전”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24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中	갬블링 및 배팅업